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89 발의연월일: 2024. 10. 7.

발 의 자:김태년・이훈기・황명선

손명수 • 전현희 • 정준호

김영진 · 김영배 · 김한규

이학영 • 전진숙 • 이기헌

염태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,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(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」 제5조의11제1항)가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대상 범죄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있음.

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손해"를 "손해, 일실이익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(배상명령) ① 제1심 또는	제25조(배상명령) ①		
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			
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			
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			
우,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			
피해자나 그 상속인(이하 "피			
해자"라 한다)의 신청에 의하			
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			
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(物			
的) 피해, 치료비 <u>손해</u> 및 위자	<u>손해, 일실이익</u>		
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		
	관한 법률」 제5조의11제1항		
	에 규정된 죄	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